

2021년 10월 주요 이슈사항: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법무법인 더함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정하는데(「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제2항), 비영리법인이란 문언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이를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 영위와 관련한 질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 절차 및 각종 유의사항을 10월의 주요 이슈사항으로 소개합니다.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범위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영리법인인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영경비 마련을 위해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에 유상 판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17, 13면.).

이때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는지’의 판단은 그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 24. 선고 2011두25012판결). 동 판결은 이러한 견지에서 주 사업인 ‘선교와 신앙훈련’ 및 이를 위한 부대사업인 ‘학교 설립’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선교 목적 학교 등에 부지·건물 매입자금을 지원한 행위 등은 목적사업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 영위 시 유의사항

법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므로(민법 제34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사업 역시 조합 정관상 목적(「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1호)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그 목적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도 부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호).

나아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①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그 사업량은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 2항).

즉,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정관상 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주 사업 내용 및 사업량을 규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게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 및 법인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4.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후에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2021)”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범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01호)”의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있어 부처별 정책지원에 따른 가점(2.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같은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데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